

예 산 총 칙

제 1 조 2020년도 대한적십자사 세입세출예산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예산총액(세출)	1,001,350,787천원
1. 본·지사 일반회계	184,251,280천원
2. 병원특별회계	191,928,711천원
3. 혈액원특별회계	429,097,644천원
4. 혈장분획센터특별회계	117,115,620천원
5. 회관특별회계	2,346,754천원
6. 수품센터특별회계	1,471,200천원
7. 퇴직금특별회계	44,317,187천원
8. 특수복지사업회계	30,822,391천원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수입·지출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병원·혈액원·혈장분획센터특별회계 및 회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초과수입금액에 수반되는 세출은 보건기관 특별회계운영규정 제18조제2항 및 제23조에 의거 초과수익 범위 내에서 비용을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제 4 조 병원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과 혈액관리본부 및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은 기관 운영의 유연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연도 중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소관기관 사업비 또는 예비비 예산범위 내에서 충당 지급할 수 있다.

- 제 5 조 직원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예산(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무운영규정 제22조에 의거 동일계정간(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전용 사용할 수 있다.
- 제 6 조 본·지사에서 봉사원 및 청소년적십자단원 등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 시 참가비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무운영규정 제51조에 의거 그 초과수입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 제 7 조 지정기부금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 지원금 증감, 사용을 승인받은 적립금(기금) 및 준비금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액 변경은 재무운영규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의거 조정 집행한 후 그 이유와 실정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이로 인한 결산절차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한다.
- 제 8 조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무운영규정 제17조의3에 의거 본사 및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의 경우 본사의 승인을 받아 우선 사용하고 당해 연도 결산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9 조 준비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재원조성에 따라 수반되는 제경비
 2. 인력의 변동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성 경비
 3. 기타 총재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업비
- 제 10 조 다음 비용의 항 및 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불구하고 초과 계리할 수 있다.
1. 퇴직급여부담금
 2. 퇴직급여
 3. 감가상각비
 4. 무형자산상각비
 5. 제세공과금

6. 공통사업비
7. 대손상각비
8. 헌혈환급대납금
9. 법인세
10. 기관간보조금
11. HLA검사비
12. 기부물품비
13. 목적사업전출금
14. 보상비용(보상충당부채)
15. 소송충당부채전입액(소송충당부채)
16. 지급입차료
17. 금융비용
18. 기타사업외비용(단, 의료부대물품비용 제외)

제 11 조 예산총칙 제3조에 의한 예산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한다.

제 12 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각 관은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비를 관리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특히 기관운영판공비(업무추진비)는 예산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3 조 조직과 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예산과 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성립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조정 집행하고 그 사유와 실정을 중앙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정관 제5조2항에 의한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같음하며 이로 인한 결산절차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계리한다.

제 14 조 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 기관은 수지의 중복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운영규정 제11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계정간 거래(기관간보조금)를 제외하여 표시할 수 있다.